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30.(수)

도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5. 27. 임태근 의원 외 8명 발의 (의안번호 제357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5. 2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283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
【2021. 6. 8. 상정 · 의결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임태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의2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 산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: 2021. 5.28. ~ 2021. 6. 4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정진만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내의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여성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지원방법 등은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, 이중 강남구, 은평구, 종로구, 서초구 등 4개의 자치구에서는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일부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 규정이 기 운용 중에 있는 바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「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에는 ‘방법시설 설치’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국·시비 지정은 불가하며 구비로만 지원이 가능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